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2025. 11. 6.

북 일 고 등 학 교

http://www.bugil.hs.kr

▌학교주소 : 우)3111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문의전화 : (041) 520-8683
▌F A X : (041) 551-7116

목 차

Ⅰ. 모집 개요 ····· 1

Ⅱ. 지원 자격 ····· 2

Ⅲ. 전형 일정 ····· 7

Ⅳ. 전형 방법 ····· 8

Ⅴ. 전형별 제출 서류 ····· 14

Ⅵ. 정원 미달로 인한 결원 보충 ····· 16

Ⅶ. 유의 사항 ····· 16

Ⅷ. 학교 현황 ····· 17

<양식 1> 입학원서 ····· 18

<양식 2> 자기소개서 ····· 20

<양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23

<양식 4>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 ····· 24

<양식 5>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추천서 ····· 25

<양식 6> 사회통합전형 사회다양성전형(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학교장 확인서 ····· 26

<양식 7> 입학 포기원 ····· 27

<양식 8>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 28

[자료]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 29

<특례양식 1> 2026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48

<특례양식 2> 2026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49

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Ⅰ 모집 개요

1 모집 정원 : 남 360명 (12학급×30명)

2 모집 지역 : 전국

일반전형(일반지원)의 경우, 타 시·도 단위와 충남 단위로 구분하여 선발

3 모집 구분

전형 구분			모집 정원	타 시·도 단위	충남 단위	비율
정원 내	일반전형	일반지원	276명	138명	138명	76.7%
		체육특기자 (야구)	12명	통합선발		3.3%
	사회통합전형		72명	통합선발		20%
정원 내 소계			360명			100%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		10명	통합선발		3%
	국가유공자 자녀		10명	통합선발		3%

※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충청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학교 정원에 관계없이 충청남도 교육감이 지정 배치한다.

Ⅱ 지원 자격

1 일반전형(일반지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형 구분	지원 자격
타 시·도 단위	1)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로 전국단위 모집학교(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등)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
충남 단위	4)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5) 중학교 졸업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6)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등)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 1), 4)항의 '졸업예정자'란 2025학년도 중학교 3학년인 학생과 조기졸업 학생을 뜻함

※ 5), 6), 7)항의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원서접수일 기준, 모든 가족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를 뜻함

2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기회균등 전형	50%이상 우선선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을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학교장 추천자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사회다양성 전형	소득 8분위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도서·벽지 거주 학생	「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해당 지역 중학교에 1년 이상 재학한 도서·벽지 거주 학생
		가정위탁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 군경, 순직 소방관,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의 자녀
		농어가 자녀	농어촌의 읍면 거주자로 읍면 지역 중학교에 1년 이상 재학한 농어가 자녀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 자녀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자녀
		의사상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보호)에 따른 등급 제1급~제6급 의사상자 또는 그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10년 이상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10년 이상 재직 중인 우편집배원의 자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자녀	10년 이상 재직 중인 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자녀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3학년 1학급인 학교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졸업자
			3학년 1학급인 학교에 2025.3.1.부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중에서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전형을 통해 정원 외(모집정원 3%)로 선발함

가.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은 건강보험료 활용이 불가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함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추천자(기회균등전형)' 추천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 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증빙서류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나.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2026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28,000	136,981	66,857	-
2인	6,293,000	225,915	162,782	229,454
3인	8,041,000	288,617	243,019	295,134
4인	9,757,000	354,964	320,449	369,517
5인	11,374,000	407,092	382,076	431,294
6인	12,904,000	461,699	447,279	506,004
7인	14,382,000	552,230	545,970	599,810
8인	15,860,000	599,810	591,277	673,463
9인	17,338,000	673,463	654,281	792,926
10인	18,815,000	673,463	654,281	792,926

※ 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다.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조부·조모,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적용 사례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특례입학 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대상자	비고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학생
유형 2-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유형 2-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자	
유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참조

4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자격

구분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하여 송부한 명단에 따름

Ⅲ 전형 일정

구분		일정	장소
1단계	원서(온라인) 접수	2025.12.05.(금) ~ 12.10.(수)	원서접수 사이트
	서류(출력물) 제출	2025.12.08.(월), 12.09.(화), 12.10.(수)	본교 접수처 (아단관 B1F)
	1단계 합격자 발표	2025.12.15.(월)	본교 누리집
2단계 (면접)	충남 단위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체육특기자	2025.12.28.(일)	본교
	타 시·도 단위	2025.12.29.(월)	
	최종 합격자 발표	2025.12.31.(수)	본교 누리집
합격자 소집		2026.1.09.(금)	본교
신입생 등록		2026.1.12.(월) ~ 1.13.(화)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6.1.19.(월) ~ 1.20(화)	본교 접수처 (아단관 B1F)
	1단계 합격자 발표	2026.01.22.(목)	본교 누리집
	면접	2026.01.23.(금)	본교
	최종 합격자 발표	2026.01.26.(월)	본교 누리집
	신입생 등록	2026.01.28.(수)	

※ 타 시·도에서 충남으로 전·편입(재취)학은 2025.11.04.(화)까지 허용함
※ 지원자는 2025.12.01.(월)부터 원서(온라인)와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능함
※ 전형료 결제(0원 결제 포함)는 본교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함 (결제 기간: 2025.12.05.(금)~2025.12.10.(수))
※ 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뒤, 본교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출력물)를 제출해야 입학지원이 완료됨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처리함
※ 우편 접수처: 우) 3111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북일고등학교 입학홍보부
※ 제출 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입학 포기자는 '<양식 7> 입학 포기원'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당해 학년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추가모집은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Ⅳ 전형 방법

✍ 일반전형(타 시·도 단위, 충남 단위),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1 자기주도학습 전형

가. 단계별 전형 요소와 배점

전형	단계	선발방법	비고
타 시·도 단위 충남 단위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1단계	교과성적 환산 점수(160점) + 출결 점수(감점)	모집 정원의 1.5배수 선발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	모집 정원 선발

※ 타 시·도 단위 또는 충남 단위 미달 인원 발생 시, 모집 단위 간 교차 충원함

미달 인원 30명 이하	미달 인원 30명 초과
미달 인원의 100% 충원	30명 + 30명 초과 인원의 50% 충원

※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 발생 시,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일반지원)으로 교차 충원함
※ 사회통합전형에서 1단계 합격정원의 50%는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로 우선 선발함
※ 사회통합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수가 1단계 합격자 정원의 50%에 미달하였을 때, 미달 인원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사회통합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사회통합전형에서 모집정원의 50%는 1단계 합격자 중 '1단계 성적+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를 우선 선발함
※ 사회통합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중 기회균등전형 우선 선발에서 제외된 지원자와 사회다양성전형 지원자 중에서 '1단계 성적+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함
※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면 미달 인원의 50%를 타 시·도 단위나 충남 단위로 충원할 수 있음

나. 동점자 처리

1) 1단계 합격선의 동점자는 1단계 합격 처리함
2) 2단계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항목 순으로 우선 선발함
 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환산 점수의 고득점자
 나)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순으로 환산 점수의 고득점자
 다) 면접평가 영역 중 인성 영역의 고득점자
 라)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1단계 전형 방법

가. 전형 요소 : 교과성적 환산 점수(160점) + 출결 점수(감점)

나. 성취도에 따른 교과성적의 환산 점수 산출법

학기	과목	A	B	C	D	E
2학년 1학기 (20%)	국어	6.4	5.76	5.12	4.48	3.84
	영어	6.4	5.76	5.12	4.48	3.84
	수학	8	7.2	6.4	5.6	4.8
	과학	6.4	5.76	5.12	4.48	3.84
	사회교과(군)	4.8	4.32	3.84	3.36	2.88
2학년 2학기 (20%)	국어	6.4	5.76	5.12	4.48	3.84
	영어	6.4	5.76	5.12	4.48	3.84
	수학	8	7.2	6.4	5.6	4.8
	과학	6.4	5.76	5.12	4.48	3.84
	사회교과(군)	4.8	4.32	3.84	3.36	2.88
3학년 1학기 (30%)	국어	9.6	8.64	7.68	6.72	5.76
	영어	9.6	8.64	7.68	6.72	5.76
	수학	12	10.8	9.6	8.4	7.2
	과학	9.6	8.64	7.68	6.72	5.76
	사회교과(군)	7.2	6.48	5.76	5.04	4.32
3학년 2학기 (30%)	국어	9.6	8.64	7.68	6.72	5.76
	영어	9.6	8.64	7.68	6.72	5.76
	수학	12	10.8	9.6	8.4	7.2
	과학	9.6	8.64	7.68	6.72	5.76
	사회교과(군)	7.2	6.48	5.76	5.04	4.32
계		160				

※ 사회교과(군) 성적은 학기별 이수한 모든 사회, 역사, 도덕 과목의 평균점수를 반영함

※ 예체능교과(군)(음악/미술/체육) 성적은 성취도 수준 C 1개당 0.1점 감점 처리함

※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환산함

- 사회, 역사, 도덕은 이수한 과목 점수만 환산함
- 사회, 역사, 도덕이 모두 없는 학기는 가장 최근 학기의 사회, 역사, 도덕 과목 성적으로 대체함
- 음악, 미술, 체육이 모두 없는 학기는 가장 최근 학기의 음악, 미술, 체육 과목성적으로 대체함
- 특정 학기의 특정 과목만 교과 성적이 없을 경우 가장 최근 학기의 동일 교과목 성적으로 대체함
- 자유학기제,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으로 부재 학기의 성적을 모두 대체함

※ 같은 학기에 동일 교과 과목을 2개 이상 이수한 경우(예: 2학년 1학기에 이수한 영어 과목이 2개인 경우) 가장 높은 성취도의 과목으로 점수를 산출함

※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3학년 2학기 성적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재가 불가한 경우 직전 학기의 성적으로 3학년 2학기 성적을 모두 대체함

다. 출결 점수 산출법

출결 점수 = - [미인정 결석일수 × 0.5]

1) 출결 점수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2025.11.28.까지)의 출결을 반영하여 산출함
※ 졸업자는 졸업일까지의 출결을 반영하여 산출함
2) 미인정 결석은 1일을 0.5점으로 환산하여 감점하며, 최대 10점을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3)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함

라. 중학교 졸업자

졸업자 성취도	수	우	미	양	가
변환 성취도	A	B	C	D	E

※ 졸업자의 성취도가 수, 우, 미, 양, 가로 명기된 경우는 위 표와 같이 성취도를 변환함

마.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과성적은 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총점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검정고시 점수	600 ~ 596	595 ~ 591	590 ~ 586	585 ~ 581	580 ~ 576	575 ~ 526	525 ~ 476	475 ~ 426	425 ~ 376	375 ~ 360
조정 교과 성적	160	157	154	151	148	145	142	139	127	124

바. 외국의 중학교 성적이 있는 지원자의 성적 처리

1) 국내 중학교 성적 중 2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의 성적이 한 학기라도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성적만을 적용하여 고입 성적을 산출함
2) 국내 중학교 성적(2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외국 중학교 성적증명서의 성적을 심사하여 산출함

입학전형위원회의 외국 중학교 성적 처리 요령

❍ 해외 학교 8학년 1·2학기, 9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국내 학교 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적용함
❍ 해외성적 일부 학기가 없는 경우, 지원 시점 기준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으로 부재 학기를 모두 대체함
❍ 반영교과는 한국어(15%), 영어(15%), 수학(30%), 과학(25%), 사회(15%)로 함
❍ 한국어가 없는 경우 영어(20%), 수학(35%), 과학(30%), 사회(15%)로 함
❍ 해당 교과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외국 중학교의 과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함
  가) A, B, C, D, E 등급 평가방식 : 국내 중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
  나) 가)의 평가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성적 처리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사. 국내 성적이 일부만 있는 지원자의 성적 처리

자유학기제 시행 등 기타 사유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지원 시점 기준 가장 최근 학기의 성적으로 부재 학기의 성적을 모두 대체함

3 2단계 전형 방법

가. 전형 요소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점수(40점)

나. 전형 내용, 평가 요소

구분	세부 구분
자기주도학습 영역	자기주도학습 경험과 그 과정
	지원동기
인성 및 진로 영역	인성
	진로활동

※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전형위원이 면접을 실시하여 영역별로 평가함

※ 2단계 전형의 평가지표와 평가척도 등은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다. 제출서류 작성 방법

1)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양식 2> 자기소개서 참조)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함
-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교과목의 점수·석차,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 단, 참여 사실만 기재 시 항목 배점의 20% 감점함
-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 및 수상 실적, 교내·외 인증 시험·각종 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 등 기재 시 0점 처리
  - 인증시험 및 각종 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0점 처리

  ※ 단, 참여 사실만 기재 시 항목 배점의 20% 감점함
- 논문 투고 또는 발표, 도서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20% 감점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1. 각종 공인어학 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 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실적 및 관련 내용*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 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 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OO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2)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방법

- 학생부II('상급학교제출용')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일반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 수상경력(3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5번) 내 중학교 3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제외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8번) 내 중학교 3학년 내용 제외

4 체육특기자(야구)

가. 대상 종목과 인원 : 야구 12명(남 12명)

나. 체육특기자 대상 종목과 지원 자격 기준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름

다. 체육특기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인원을 모집 정원에 포함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함

라. 체육특기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체육 종목별 정원 요청과 승인을 거쳐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여 선발함

마. 체육특기자도 본교 입학전형 요강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발함

바. 체육특기자 지원자의 중학교 재학 중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위해 '<양식 8>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함

5 2026학년도 입학전형 안전관리계획(요약)

가. 고입전형 면접 방법 : 대면 면접 또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면접

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간 쌍방향 원격 면접을 시행할 수 있음

다. 감염병 감염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전형별 면접 평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1단계 점수(내신+출결점수)로만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라. 감염병 확진자가 격리되어 대면 면접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간 쌍방향 원격 면접에 응시 가능함(확진자 전형 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제출자에 한함)

마. 자가격리자는 대면 면접 2일 전까지 시험 본교에 사전 신청하는 경우만 실시간 쌍방향 원격 면접에 응시 가능함(자가격리자 전형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제출자에 한함)

Ⅴ 전형별 제출 서류

공통 서류

대상	제출 서류
모든 전형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1부(상급학교제출용, 원본대조필) ■ <양식 1> 입학원서 1부(온라인 작성 후 출력) ■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온라인 작성 후 출력) ■ <양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후 출력)

※ 입학원서 매 페이지 상단 오른쪽 여백에 지원자의 수험번호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1부(상급학교제출용, 원본대조필) 제출 방법

- 단면 인쇄 후 클립으로 상철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출석 성적 산출 마감 기준일 2025.11.28.(금) 이후 출력
- 출력 옵션 중 '서울 이외 방식 자사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출력
- 원본대조필 직인을 날인 후 간인 처리된 원본 제출
  - (원본대조필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첫 페이지에 앞면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날짜를 적은 다음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부분에 학교장 직인을 날인
  - (간인 날인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페이지 중간에 원본대조필에 날인된 학교장 직인으로 간인 처리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로 대체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중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모든 전형의 전형료는 온라인 접수 시 결제를 진행함(전형료 10,000원(단, 일부 전형은 0원 결제))

전형별 추가 서류

대상		제출 서류
일반전형	체육특기자(야구)	■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1부(온라인 작성 후 출력) ■ 경기 실적 증명서 1부 ■ 상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해당자에 한함) ■ 이적 동의서 1부(타 시·도 지원자에 한함)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 <양식 4>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 1부 ■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붙임 참조)
	사회다양성전형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 <양식 4>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붙임 참조)
특례입학 대상자 (정원 외)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유형별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자녀 (정원 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급) 1부

※ <양식 4>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는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자동 입력되며, 출력 후 날인(서명)하여 제출

※ 국가유공자 자녀 확인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하여 송부한 명단에 따르므로 국가유공자 자녀(정원 외) 대상이면서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함

붙임 **사회통합전형 지원유형별 제출 서류**

지원 유형			제출 서류	발급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양식 4>**	**주민센터**
기회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학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교육비지원 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추천서<양식 5> 1부 : 중학교 추천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 추천 - 객관적 증빙서류(예: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추천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견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에 동 사실을 명기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사회다양성 전형	**공통**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다문화가족 자녀		▸ 국적취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 1부(택1)	해당 기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도서·벽지 거주 학생			
	가정위탁 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부	
	복지시설 입소 아동		▸ 수급자증명서 1부	
	공동생활가정 아동		▸ 재원증명서 1부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 순직확인서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장애인 증명서 1부	
	농어가 자녀		▸ 농가 자녀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어가 자녀 : 어선원부 또는 맨손어업허가증 1부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항 또는 사망 사항 기재) 1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의사상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확인서 1부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 학교장 확인서 <양식 6>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는 납부확인서, 영수증, 고지서 중 택1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원자에게 제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Ⅵ 정원 미달로 인한 결원 보충

1.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2. 미달 인원에 한하여 추가모집을 실시하며, 고입 내신성적으로 전형한다.
3. 합격자의 입학 전 타 시·도 전출, 입학 포기원 제출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입학 후 전입생 등으로 충원한다.
4. 추가모집, 전입학으로 결원을 보충하지 못한 경우 미달 인원에 한하여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Ⅶ 유의 사항

1.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재취)학은 『2025. 11. 4.(화)』까지 허용한다.
2. 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3. 고등학교 자퇴생과 퇴학생은 내신성적산출기준일(11.28.) 이전 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1)]
4.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 책임하에 금지하고, 이중지원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1개 고등학교만 지원해야 한다(전형시기와 시·도가 다르더라도 2개교 지원 불가).
   나.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 먼저 시행한 전형에서 합격된 자는 이후 전형에 절대 지원할 수 없다.
   라. 전·후기학교에 합격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마. 이중지원 사례
   1)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2)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바. 이중지원의 예외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각종학교 등의 지원은 이중지원의 예외로 하되, 영재학교간 중복지원은 금지한다.
   사. 본교 원서 접수 과정에서 전형료를 결제하는 것은(0원 결제 포함) 본교에 입학 지원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다른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5. 면접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6. 입학 포기자는 <양식 7> 입학 포기원을 예비소집일 이후 학교로 제출해야 하며, 당해 학년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7. 전형자료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8. 본교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으나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9.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0.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적용한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041-520-8683)로 문의한다.

2025. 11.

북일고등학교장

---

1) 고등학교 중도탈락학생(자퇴생, 퇴학생) 원서작성 시 중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제적증명서' 확인 후 원서작성
* 추가(수시)모집의 경우 자퇴·퇴학 학적처리가 원서 접수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함.

Ⅷ 학교 현황

1 학교 안내

1. 기본 내용(2025년 6월 기준)

가. 설립 구분 : 사립, 단설 고등학교(1975년 11월 14일 설립)

나. 학생현황

1학년 (12학급)	2학년 (12학급)	3학년 (12학급)	합계
371명	323명	312명	1,006명

다. 교원수 : 89명(남 54명, 여 35명)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합계
1명	1명	12명	75명	89명

라.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마. 대표번호 : 041-520-8600

2. 교육목표

건학이념	새로운 시대에는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 학교 교육도 시대가 요구하는 동량재를 교육해야 하는 의의가 있으므로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적 초석이 된다. 본교는 이러한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학문에 뜻을 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면학에 정진하여 국가 사회에 기여 봉사할 유용한 역군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설립자 훈	신념, 용기, 봉사
교훈	애국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3. 북일고등학교 홍보 브로슈어 안내

가. 내용 : 학교 운영,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내용 포함

나. 북일고 누리집(http://www.bugil.hs.kr) → 입학지원센터 → 입학자료실 → 홍보브로슈어

2 기숙사 현황

구분	정원	선발 방법
1학년	남자 283명	기숙사 정원 보다 입사 희망자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1. 천안 외 충남, 타 시·도 단위 우선 입사 2.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우선 입사
2학년	남자 283명	1. 입사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2. 통학시간, 기숙사 생활태도 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
3학년	남자 283명	

<양식 1> 입학원서

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수험번호		지원구분			
사 진 (3.5㎝ x 4.5㎝)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온라인접수시 업로드** **출신학교장 직인**		지원자 인적사항	이 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지원자			
			보호자			
			담임교사			
		학력	중학교 3학년 반 번			
			□졸업예정 □졸업 (년 졸업) □중졸 검정 (년 합격) □기타			

1. 교과 성적(성취도 A~E기입) 및 출결 성적

	교과	과목	2 학 년		3 학 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성적	국어	국어				
	사회	도덕				
		사회				
		역사				
	수학	수학				
	과학	과학				
	영어	영어				
	예체능	체육				
		음악				
		미술				
	교과 성적 환산 점수 총 합계					

출결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11월 28일)	미인정 결석 ___회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___회	출결상황 감점	
담임교사 성적확인	3 학년 ( )반 담임교사 ( )[서명]		

국 가 유 공 자
보 훈 번 호
【 】

국가유공자 보훈번호 기재는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자에 한함

본인은 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5년 12월 일

지원자 이름 : _____ [서명]

보호자 이름 : _____ [서명]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25년 12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입학원서 작성요령

1. 온라인 접수 후 출력하여 등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한다.(단, 출력물 각종 날인이나 서명 필요)
2. 지원 구분란에는 타 시・도 단위 일반전형, 충남 단위 일반전형, 사회통합 기회균등전형, 사회통합 사회 다양성 전형,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중 해당 항목을 표기한다.
3. 지원자의 학력란은 해당부분 [졸업예정, 졸업, 검정고시합격, 기타]에 클릭하여 표시한다.
4. 교과 성적란에는 과목별 성취도 수준(A~E)을 입력한다.
5. 출결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 3학년 11월 28일 까지이며, 출결은 미인정 결석・결과・지각・조퇴한 횟수만 기재한다.
6. 사진은 원서제출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컬러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한다.(출력시 흑백프린트 가능)
7. 검정고시 출신자는 직인란에 접수 학교장이 날인한다.
8. 전형료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납부한다.

제 출 서 류

① 입학원서 1부
②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원본대조필)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해당자)
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⑦ 지원자격별(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체육특기자) 증빙서류(해당자)

수 험 표

수험번호	
이 름	
출신학교	중 학 교

사 진
(3.5㎝ x 4.5㎝)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온라인접수시 업로드

북일고등학교

* 수험표는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출력됨
* 면접평가 전까지 수험생이 보관해야 함
* 수험표는 면접전형 대기실 입실 시 지참해야 함

<양식 2>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3페이지 중 1페이지>

2026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북일고등학교

자기소개서

수험 번호	

지원자 기재 사항

이 름 _____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 _____

연 락 처 지원자: 보호자:

2025년 12월 일

지원자 이름 : _____ [서명]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따라 정직하게 기술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교과목의 점수석차,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 및 수상 실적, 교내외 인증 시험각종 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 진술 포함) 등은 기재 시 0점 처리(참여사실만 기재 시 항목 배점의 20% 감점)되며, 논문투고 또는 발표, 도서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어학연수·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20%가 감점 처리되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하단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참고]**

1.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 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2.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3.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4.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5.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6. 도서출간 사실
7.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8.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다만, 특례입학대상자 또는 중학교 해당 기간의 2년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검정고시생·외국인의 경우 해외 교육기관의 교육경험 포함 가능(대회참여·수상실적은 제외)
9.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10.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11.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참고자료]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12.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13.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14.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15.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16.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3. 반드시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정해진 글자 수(띄어쓰기 제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지정된 분량 내에서 작성하십시오.
4. 자기소개서는 입학원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십시오.
5.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클립으로 묶어 주십시오.
6. 자기소개서는 입학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3페이지 중 2페이지>

수험번호	

1번. 북일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이유와 지금까지 스스로 학습(學習)계획을 세워 학습해 온 과정 그리고 진학 후 학업(學業)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8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수험번호	

2번. 지원자의 인성을 보여주는 사례와 본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 활동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800자 이내 - 띄어쓰기 제외)

<양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초·중등교육법」제47조와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와「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4조, 제35조~제38조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 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 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격·지원 결격사유 조회와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본 입학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4>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확인서

접수번호	2025 -

이 름	지원자		생년월일	
	보호자		생년월일	
주 소				
출신학교 (검정고시)	( ) 중학교 ( )년 ( )월 (졸업 / 졸업예정) ( )지역 ( )년 ( )월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지원 자격	기 회 균 등	자격 ( )		
	사 회 다 양 성	자격 ( ), 소득분위( )		

본인은 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및 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지원자 ( ) (서명)

보호자 ( ) (서명)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 접수번호 : 고등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접수번호 기록

※ 지원 자격

- 기 회 균 등 : ( )안에 자격 기입
- 사회다양성 : ( )안에 자격, 소득분위(건강보험료 기준) 기입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 란에 '검정고시' 기입, 학교장 직인 날인은 생략

<양식 5> 사회통합전형 학교장 추천서

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 교 장 추 천 서

수험번호	

이름		생년월일	20 . . .
출신학교	( ) 중학교 ( )년 ( )월 (졸업 / 졸업예정)		
지원유형	기회균등전형(학교장이 추천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원자)		
증빙서류			
추천사유			
2025년 12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직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 신청번호 : 중학교별로 신청서를 접수한 연번호 기록

※ 학교장 추천자(기회균등전형)는 **추천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해야 하며, 지원 고교에 '보호자·학교장 확인서', '학교장 추천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양식 6> 202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사회다양성전형(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학교장 확인서

학 교 장　확 인 서

학적사항	학년　　반　　번		
이름		생년월일	20　.　.　.
출신학교	(　　) 중학교 졸업(예정)		

확인 내용

본교 2025학년도에 3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지원자 (　　)가 본교에서 두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2025년　　12월　　일

○○○학교장[직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7> 입학 포기원

입학 포기원

지원자	출신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호자	이름		지원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에 합격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인하여 입학을 포기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 사유	□ 입학 전 타 시·도 전학
	□ 유학 □ 대안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진학 □ 진학 포기 □ 기타( ) ※입학 전 타 시·도 전학 이외의 입학예정자로 입학을 포기한 자는 당해 학년도 고입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북일고등학교 입학 포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확인하였습니다. □**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출신중학교' 란에 '검정고시'로 기재

<양식 8>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 기본사항

학교명		이름	
종목		성별	
지원구분	입상(참가)실적 □		추천 □

□ 최저학력제 적용 사항

학기 / 과목	학년 평균 점수	지원 학생 점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 X)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학년 평균 점수	지원 학생 점수	최저학력 도달여부 (○, X)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학기 / 과목	2학년 1학기 (자유학기□)				2학년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학기 / 과목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작성방법

- 충남 학생은 충남고입시스템 활용 ◘ **[입학]-[충남고입]-[고입_원서관리(중)]-[체육특기자학교장확인서등록(중)]**
- 점수는 소수 이하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출
- 최저학력 :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의 40% 이상 **도달한 경우 '○', 미도달한 경우 'X'** 표기
- 미도달과목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이수 문서번호** : 학교장 확인 내부결재 문서번호 기재
- '사회' 과목이 미편성된 학기의 경우 '역사', '도덕' 과목 순으로 대체
- 작성 시 문의 사항은 교육(지원)청 체육담당자에게 문의

※ 3학년 2학기 미도달 과목 발생 시 고등학교 입학 후 대회 참가 제한 가능(반드시 보충학습프로그램 이수)

체육특기자 지원 대상자의 최저학력제 시행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직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2026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중등교육과

Ⅰ 목적

1. 고등학교 특례입학전형 대상자의 기준과 제출서류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고등학교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Ⅱ 관련 근거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92조(준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4. 2026학년도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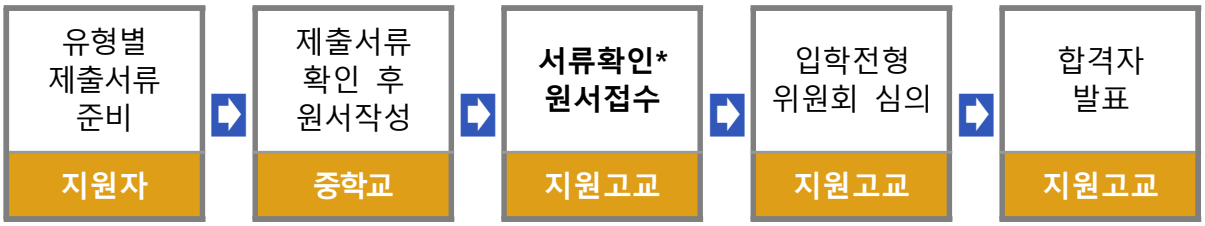
Ⅲ 용어의 정의

특례입학 전형	외국에서 장기간 수학한 학생 또는 외국인 등이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또는 재학,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재외국민 등록일부터 등록 만료 날까지의 기간)**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 또는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 일수를 제외한 기간
재학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영사 확인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 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Ⅳ 업무처리 절차

1. 학교장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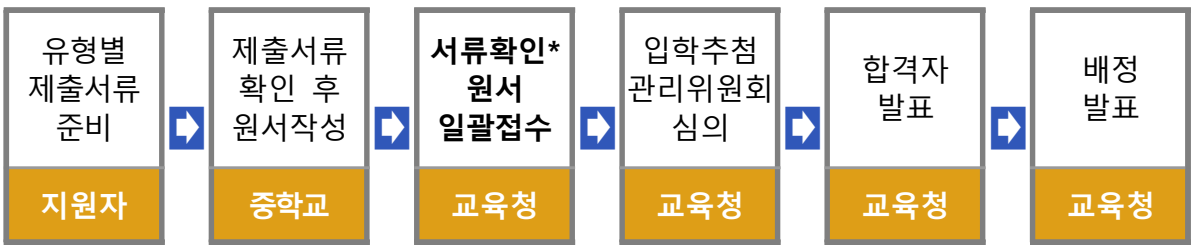
☞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개별 지원



* 특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정확히 확인

2. 교육감전형

☞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정한 인원수(비율)를 교육감전형 배정원칙에 따라 우선배정



* 특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정확히 확인

Ⅴ 특례입학 대상자 유형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의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원 외(모집정원 3%)로 입학전형을 실시함**

구분	대상자	비고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학생
유형 2-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유형 2-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자	
유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Ⅵ 유형별 세부 내용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적용사항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국내 중학교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 중학교에 입학,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또는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출입국사실증명(지원자)	
	주민등록등본	o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o 귀국일자 이후 발행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또는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주민등록등본	o 통일부, 해당 행정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 참조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적용사항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 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에 2년 이상 재학**

-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의 기간이 필요(초등학교 1~3학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
-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외국 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는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1학기 이상)의 일부를 이수**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거주는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부모 모두 각각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구분	거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재학기간 동시 적용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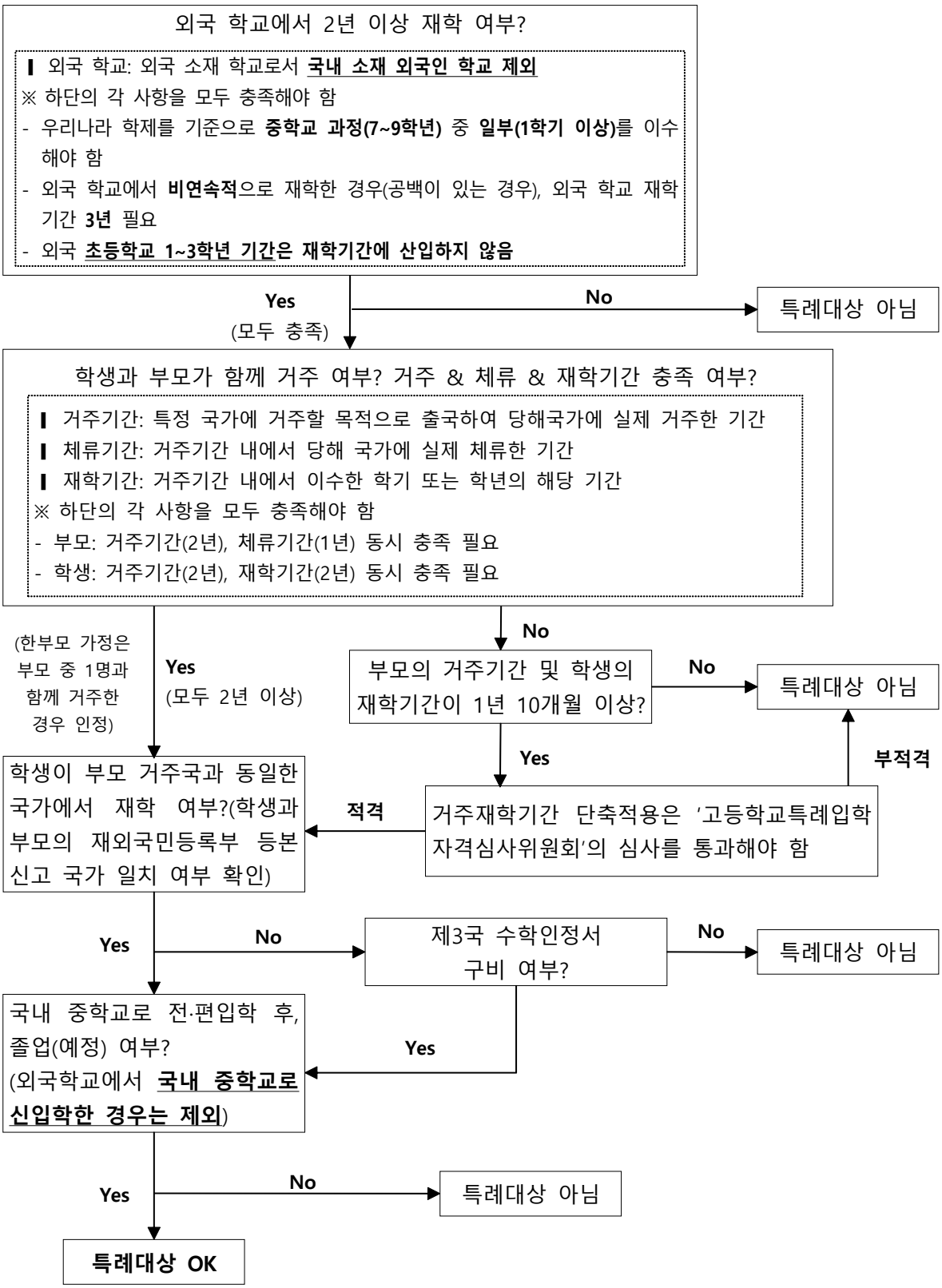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혹은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o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 사실증명서	o 부・모・지원자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o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o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o 부・모・지원자 모두 제출 ※ 재외국민 미등록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문서**로 정밀하게 심사 후 대체 가능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o 국제 정세 등으로 지원자가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o 한부모 가족에 한함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 참조

** '여권에 날인된 한국과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대상 확인 흐름도



유형 2-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외국 소재** 학교입니까?			**지원 불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지원 불가
	2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초등학교 1~3학년은 재학기간 불산입
	3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하여 재학**하였습니까?			외국학교 재학기간 3년 필요	
	4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중학교 신입학은 지원 불가
	5	외국의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6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7	**부모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체류기간이 1년 이상**입니까? (동시 충족 필요)			**지원 불가**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 가능
제출서류	8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9	제출처는 **재학중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2-나. 정부의 초청(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적용사항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 재학 기간, 외국 거주(체류) 기간 연한 미적용
- 국내 중학교 **신입학은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1학기 이상)의 일부를 이수**
-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교수요원의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혹은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 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o 해당자에 한함
출입국사실 증명서	o 부・모・지원자 모두 제출
주민등록등본	o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o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o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증빙자료 제출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 참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추천을 받아 귀국한 자녀입니까?			**지원 불가**	외국 정부의 초청은 지원 불가
	2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중학교 신입학은 지원 불가
제출서류	3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4	제출처는 **재학중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2-다. 외국인 학생

적용사항

외국인 학생으로 1학년 기준일(7월 1일) 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 확인
- 지원자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은 경우 번역된 성명 기재
- **국내 중학교 신입학은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1학기 이상)의 일부를 이수**
- **이중(복수) 국적**을 가진 지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
-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는 경우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번역 공증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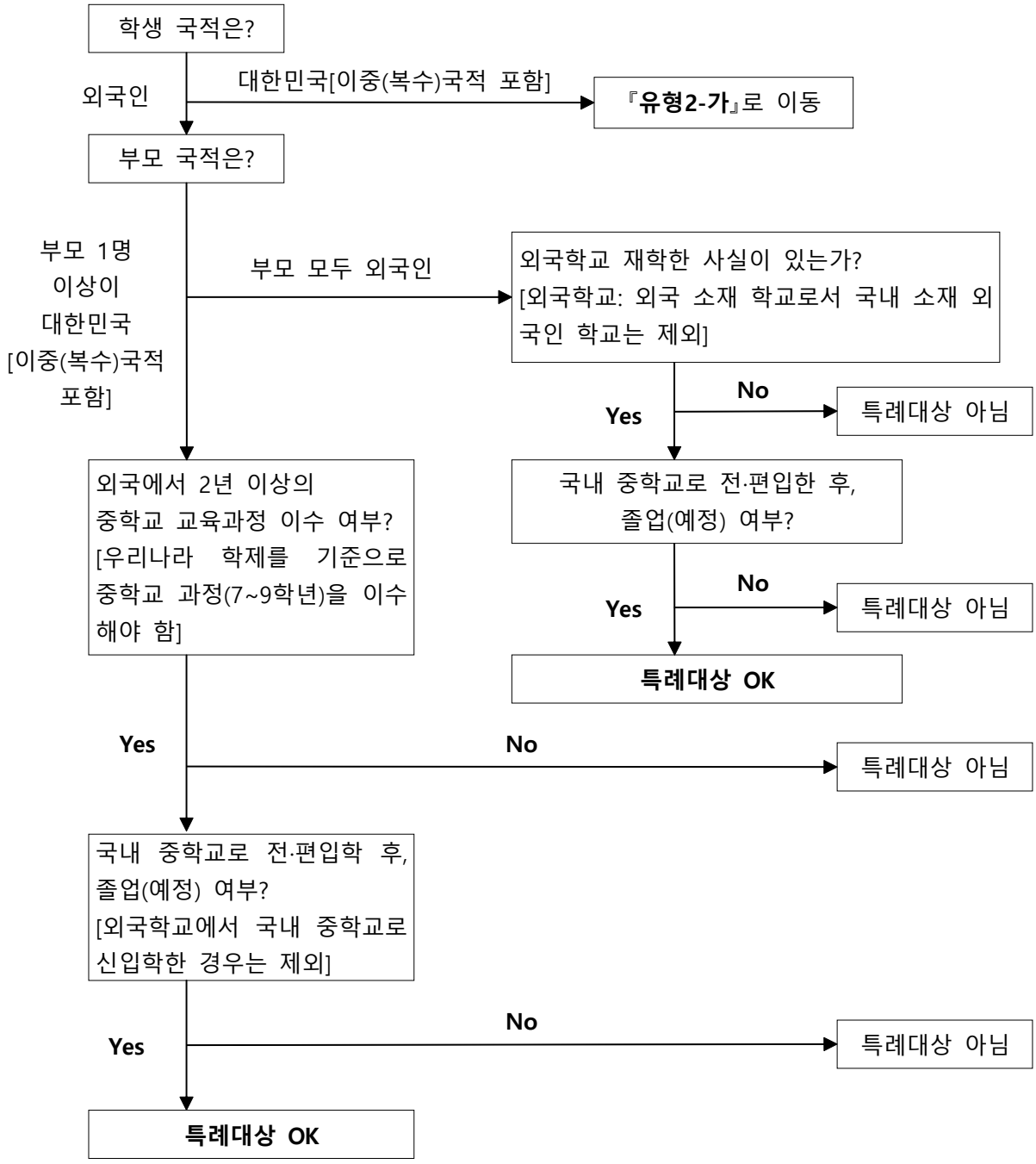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혹은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 사실, 성적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탑재)에 한하여 학교장 발급 서류와 확인서 제출 -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외국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출입국사실 증명서	o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o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o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한국계 외국인)만 발급, **가족사항이 표기된 증명서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o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o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모와 지원자 모두 제출 o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지원자만 제출

** 교육부 누리집 : [정책]-[초·중·고 교육]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 참조

유형 2-다. 외국인 학생

■ 대상 확인 흐름도



거주기간 연한 미적용

유형 2-다. 외국인 학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외국인입니까?			**지원 불가**	
	2	**이중(복수)국적자**는 이 전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중(복수)국적자가 아닙니까?**			**"유형2-가"로 이동**	"예"일 경우 지원 가능
	3	**외국 소재** 학교입니까?			**지원 불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지원 불가
	4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중학교 신입학은 지원 불가
	5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제출서류	6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7	제출처는 **재학중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3. 북한이탈 학생

적용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한 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해야 함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혹은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학력확인서	o 통일부, 해당 행정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o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o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o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o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서류

구분		질문	답변		답변이 "아니요"일 경우	비고
			예	아니요		
대상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입니까?			**지원 불가**	
	2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3	북한에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였습니까?**			**지원 불가**	
제출서류	6	제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습니까?				
제출처	7	제출처는 **재학중인(졸업한) 중학교**입니다.				

유형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적용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와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o【양식1】 혹은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o【양식3】
학력인정증명서	o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o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o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o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o 부모가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Ⅶ 기타 업무처리 방법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 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9 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 외국의 학제 】

국가명	학제												총수학기 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년
대한민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북 한	인민1	인민2	인민3	인민4	고등중1	고등중2	고등중3	고등중4	고등중5	고등중6			10년
미 국	1	2	3	4	5	6	7	8	고1 9	고2 10	고3 11	고4 12	12년
필 리 핀	1	2	3	4	5	6	7	고1	고2	고3	고4		11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년
브 라 질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러 시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F6.7	13년
호 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중4	고1	고2	12년

2. 외국학교 인정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본 안내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충남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또는 「충남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적용한다.

2. 외국의 공문서 국내 사용 방법

▢ 관련 규정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 법령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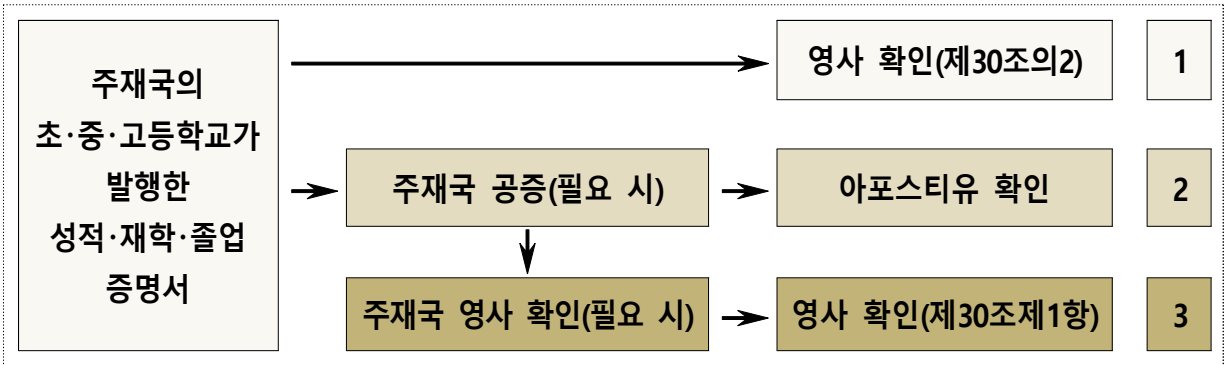
❍ 외국의 학적서류는 해당 외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을 할 수 있음(영사 확인)

❍ 다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이면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외국 공문서 국내 사용법

❍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는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학적서류 국내 사용을 위한 3가지 방법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4. 6. 5. 기준)

지역	국가명	비고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22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52개국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2개국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31개국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14개국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5개국
계		**126개국**

※ 아포스티유 협약 발표 예정 국가

- 방글라데시(2025. 3. 30.)

※ 협약가입국 갱신 현황 확인 사이트

- 재외동포청(www.oka.go.kr) - 재외동포 지원서비스 - 민원업무 안내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붙임1】 유형별 제출서류

해당자별 / 제출서류	특례 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비고
	유형1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2-다	유형3	유형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이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정부초청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학력 인정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	○	○	○	○	o【양식1】 혹은 【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	○	○	○	○	○	o【양식3】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	○	○			o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o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누리집 탑재)에 한해 학교장 발급서류, 확인서 제출 o 누리집 미 탑재학교는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o 해당 학교
출입국사실증명	○ (지원자)	○ (부, 모, 지원자)	○ (부, 모, 지원자)	○ (지원자)			o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	(○)	○			o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정부증명서 등) o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한국계 외국인)만 발급, **가족사항이 표기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인	○	○	o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 모, 지원자)					o 외국 체류기간 명시 o 재외공관장,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처

해당자별 / 제출서류	특례 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비고
	유형1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2-다	유형3	유형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이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정부초청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학력 인정	
제3국 수학 인정서		(○)					부모체류국 해외공관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부, 모, 지원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모·지원자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지원자만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시·군·구청
학력확인서	(○)				○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학력인정증명서						○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3국 수학인정서 : 국제 정세, 내전 등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해외공관에서 발행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특례양식1】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지원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교	(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보호자	이름		관계		집전화	
					휴대폰	
지원유형 (해당자에 √)		□ 유형1 □ 유형2-가 □ 유형2-나 □ 유형2-다 □ 유형3 □ 유형4				

지원자 학력	국내 학력	년 월 일 중학교 ( )학년으로 (취학·재취학·편입학)			1학년 기준일(7월 1일) 이후 재취학(편입학) 여부 확인 □
	외국 학력	국가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외국 재학학년 (반드시 현지 학년으로 표시)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 . . ~ . . . (년 개월)	(~ 학년) (졸업, 수료, 재학)

유형 2-가 해당자만 작성

	구분	출국일자	입국일자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국외체류 거주기간	지원자	. . .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부	. . .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모	. . .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본인은 2026학년도 북일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지원자 (서명)

보호자 (서명)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중학교장 [직인]

북일고등학교장 귀하

위와 같이 고등학교 특례입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보호자: (서명)**

▌거주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거주기간을 기재**하고 실체류기간은 **거주기간 내에 거주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

【특례양식2】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서

지원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학교	(　　)중학교　제　학년　반　번			담임교사 연락처	
	특례 유형	유형 (　　)				

해당자별 / 제출서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을 준용						제출서류 확인 체크 표시(√)
	유형 1	유형 2-가	유형 2-나	유형 2-다	유형3	유형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 이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 (부모와 함께)	정부초청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학력 인정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	○	○	○	○	○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	○	○	○	○	○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출입국사실증명	○ (지원자)	○ (부, 모, 지원자)	○ (부, 모, 지원자)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	(○)	○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인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 모, 지원자)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부, 모, 지원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	
학력확인서	(○)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학력인정증명서						○	
고등학교 우선배정 신청서 (교육감전형만 해당)	(○)	(○)	(○)	(○)	(○)	(○)	

▌제출서류 중 **(○)는 해당자만 제출**함

○○○중학교 담임 :　　(서명)